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41
----------	------

발의연월일 : 2020년 5월 일
발의자 : 방미숙 의원

1. 개정이유

-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어 창업 및 다양한 경영 안정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과 생산제품 에이알(AR)스마트 서비스 판로 지원사업, 상표 및 디자인 공동개발사업 등 소상공인 제품 공동 전시 판매장 설치 지원 사업 마련.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나. 「은행법」 제2조(정의)
- 다.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가. 입법예고기간 : 2020년 5월 18일 ~ 5월 25일(7일)
- 나. 의견 내용 :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부서 검토의견(기업지원과)

○ 조례안 제2조 ~ 제6조의 “소상공인” 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으로 변경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이라 한다」 제2조(정의)에서 “소상공인” 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3]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그 밖에 업종은 5명 미만의 기업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법」에 따른 위임으로 제정된 조례이므로 법상 정의인 “소상공인” 용어를 준수하여야 하고,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의 지원은 「소상공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 나. 부서 검토의견 반영 여부 : 반영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소상공인” 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로 개정한다.

제4조(경영안정지원)를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으로하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를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4조에 5호, 6호, 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소상공인의 생산제품 에이알(AR)스마트,서비스 판로 지원사업.
6. 소상공인의 상표 및 디자인 공동개발사업.
7. 소상공인의 제품 공동 전시판매장 설치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소재 하고 있는 <u>소상공인</u>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상공인</u>”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u>은행법</u>」 제2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u>농업협동조합법</u>」 및 「<u>수산업협동조합법</u>」에 의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라 함은 <u>소상공인</u>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라 함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u>소상공인</u>에게 신용보증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p>제3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u>소상공인</u>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p>	<p>제1조(목적)</p> <p>.....</p> <p>.....</p> <p>....</p> <p>제2조(정의)</p> <p>.....</p> <p>1.”<u>소상공인</u>”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제2조 및 「<u>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u>」제8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p> <p>2.</p> <p>.....</p> <p>.....</p> <p>...</p> <p>3.</p> <p>.....</p> <p>.....</p> <p>.....</p> <p>....</p> <p>4.</p> <p>.....</p> <p>5.</p> <p>.....</p> <p>.....</p> <p>6.</p> <p>.....</p> <p>제3조(지원계획 수립)</p> <p>.....</p>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2011. 5.23>

제4조(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11.5.23>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5. (신 설)
6. (신 설)
7. (신 설)

제4조의2(특례보증)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5.23.>

-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의3(이차보전) ① 시장은 시 협약에 의하여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신설 2011.5.23.>

- ② 이차 보전율은 연3% 이내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지원.....

.....

1.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상담, 자문 및 서비스경쟁력 강화 교육사업

2.

.....

3.

4.

.....

5. 소상공인의 생산제품 에이알(AR)스마트, 서비스 판로 지원사업

6. 소상공인 상표 및 디자인 공동개발 사업

7. 소상공인 제품 공동 전시판매장 설치 사업

제4조의2(특례보증) ①

.....

.....

②

.....

③

.....

제4조의3(이차보전) ①

.....

.....

②

.....

③ 이자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의4(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5.23>

②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수수료는 연 1%내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5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
2.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

제4조의4(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①
.....
.....
.....

②
.....
.....

③
.....

제5조(보증재원) ①
.....
.....

②
.....
...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
.....

1.
.....
2.
.....
3.
.....
4.
.....

<p>1.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p> <p>2. 사치 오락업·숙박업 등 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p> <p>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p> <p>② 지원제외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1.</p> <p>2.</p> <p>3.</p> <p>②</p>
<p>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8조(시행규칙)</p> <p>.....</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p>
<p>부칙<개정 2009.8.11.></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p>
<p>부칙<개정 2011.5.23.></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p> <p>.....</p>
<p>부칙 (신 설)</p>	<p>부칙<개정 2020. 6. 00></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5. 7. 24.>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융업무”란 대부분 요구불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

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8. “동일인”이란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9. “비금융주력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그 동일인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그 투자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경우(이 경우 지분계산에 있어서 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한책임사원이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비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함으로써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해당 사원과 다른 유한책임사원으로서 해당 사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취득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마. 라목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 중 이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의 해당 투자목적회사

10. “대주주(大株主)”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이하 “지방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의 그 주주 1인

나. 은행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이 최대주주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면(任免)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 경우의 그 주주 1인

②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